

대 법 원
제 3 부
[2018두265]

사 건 명 : 직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

원 고 : 원고

부산 사하구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변호사 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1, 대법관2, 대법관3, 대법관4